

【 3 】 궐원교육위원회선출에 따른 후보자 추천의 건

제의년월일 : 1993. 4. 16.

제 의 자 : 의 장

제안이유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하는 궐원 교육 위원의 선출에 따른 입후보자를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코자 하는 것임.

주요골자

- 추천근거 :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
- 추천대상자

성 명	주민등록번호	주 소	경력여부
변 창 우 (邊 昌 雨)	380305 - 1221721	광적면 가납리 81	비 경력

【 4 】 제17회의회 임시회의사일정

년 월 일시	차 수	안 건	비 고
93. 4. 15(木) 10 : 00	1	1. 의장. 부의장선거	◦ 의장 직무대행 제의
		◦ 개회식	◦ 사회 : 의사계장 ◦ 부군수, 각실과소장 참석